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신청자격	1	<p>Q. 신청주체별 신청 자격과 공동협업 수행 참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 * NCAS ID 기준</th> <th colspan="2">지원신청 가능여부</th> <th rowspan="2">공동협업 수행 참여 가능여부</th> </tr> <tr> <th>실험 창작</th> <th>확장 발표</th> </tr> </thead> <tbody> <tr> <td>개인</td> <td>○</td> <td>X</td> <td>○</td> </tr> <tr> <td rowspan="3">단체</td> <td>민간 단체·기관·기업</td> <td>○</td> <td>○</td> <td>○</td> </tr> <tr> <td>국·공립 단체·기관·기업</td> <td>X</td> <td>X</td> <td>○</td> </tr> <tr> <td>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Q.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프로젝트팀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총괄자 개인 명의로 신청하시거나, 공동협업 수행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p> <p>Q. 기초문화재단이 직접 신청주체가 되어, 다른 단체 또는 예술가와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공립(시·도·군) 단체·기관·기업의 경우, 주체로서 지원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공동참여 협약서 체결 대상인 공동참여단체로는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p>	구분 * NCAS ID 기준	지원신청 가능여부		공동협업 수행 참여 가능여부	실험 창작	확장 발표	개인	○	X	○	단체	민간 단체·기관·기업	○	○	○	국·공립 단체·기관·기업	X	X	○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	○	○
	구분 * NCAS ID 기준	지원신청 가능여부		공동협업 수행 참여 가능여부																					
실험 창작		확장 발표																							
개인	○	X	○																						
단체	민간 단체·기관·기업	○	○	○																					
	국·공립 단체·기관·기업	X	X	○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	○	○																					
2	<p>Q. 2022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신청 할 수 있나요? ▶ 2022년도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한 프로젝트와 동일한 내용으로는 지원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이 2022년도 프로젝트에서 발전된 계획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연도별 프로젝트 차별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원신청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2022년도 선정 프로젝트</th> <th></th> <th colspan="2">2023년도 신청 가능 형태</th> </tr> </thead> <tbody> <tr> <td>실험 창작</td> <td>시범 프로젝트, 쇼케이스</td> <td>→</td> <td>확장 발표 신청 가능</td> <td>완성된 작품 발표</td> </tr> <tr> <td>확장 발표</td> <td>완성된 작품 발표</td> <td>→</td> <td>확장 발표 신청 가능</td> <td>기존 프로젝트 고도화, 관객 확대 필수</td> </tr> </tbody> </table>	2022년도 선정 프로젝트			2023년도 신청 가능 형태		실험 창작	시범 프로젝트, 쇼케이스	→	확장 발표 신청 가능	완성된 작품 발표	확장 발표	완성된 작품 발표	→	확장 발표 신청 가능	기존 프로젝트 고도화, 관객 확대 필수									
2022년도 선정 프로젝트			2023년도 신청 가능 형태																						
실험 창작	시범 프로젝트, 쇼케이스	→	확장 발표 신청 가능	완성된 작품 발표																					
확장 발표	완성된 작품 발표	→	확장 발표 신청 가능	기존 프로젝트 고도화, 관객 확대 필수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3	<p>[해외 예술인] Q. 해외 거주 중인 예술인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 따라 아래 조건 충족 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p> <p>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주체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 ①국내 거주 향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②결과발표 시점(5월 2주 예정)까지 실물 OTP* 발급가능으로 선정 직후 교부신청이 가능한 자(2가지 모두 충족)</p> <p>* (실물 OTP 발급) '예치형'사업으로써 e나라도움을 통한 거래를 위해서는 실물 OTP발급이 필수입니다. (스마트/모바일 OTP 등록 및 사용 불가) 국외거주 및 전염병 등으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비예치형'으로의 사업유형 변경이 불가하며, 실물 OTP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주체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 위 2가지 조건 외에 ③신청접수마감일(3.14.월 18:00) 기준 예술인 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 증명이 확인된 자(3가지 모두 충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 창구를 통한 발급가능 여부 및 일정 확인 필요</p> <p>3)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주체가 아닌 공동참여자·단체·기업 및 그 외 단순 참여 인력인 경우, 해외 예술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예술활동 증명' 불필요)</p>
신청자격	4	<p>[중복지원] Q. '개인'과 '단체'(단체 대표자명과 개인명 동일)로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각각 다른 유형(실험 창작, 확장 발표)에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신청인·단체(대표 및 공동대표자 중복 포함) 기준으로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2개 유형(실험 창작, 확장 발표) 중 택 1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불가) NCAS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공동 대표자가 '단체' 로 실험 창작에 신청하고, '개인'으로 확장 발표에 신청 ⇒ 2개 사업 모두 행정 결격 · (신청 불가) NCAS 신청주체의 대표자가 '단체' 로 1개 사업을 신청하고,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단체'로 다른 사업유형에 신청 ⇒ 2개 사업 모두 행정 결격 · (신청 불가) NCAS 신청주체의 대표자가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고, 또 다른 사업에 공동협업 수행으로 참여한 경우 ⇒ 신청주체 사업 행정 결격 · (신청 가능) NCAS 신청주체가 아닌, 실연 등 단순 참여인력으로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여러 사업에 참여 · (신청 가능) NCAS 신청주체가 아닌, 공동협업 수행 참여자(단체)로 여러 사업에 참여한 경우 </div> <p>Q. 동일인·단체가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사업'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서로 다른 내용의 프로젝트일 경우, 동일인·단체라 하더라도 위 3개 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내용의 프로젝트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다만, 지원심의 기준(수행역량)과 관련하여 사업 기간 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원활히 수행하는 것(사업 기간 및 규모 등 고려)이 가능할지 지원신청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신청자격	5	<p>[과거 사업수행 실적] Q. 지원신청서에 최근 3년간 메타버스 관련 사업수행 실적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메타버스 예술활동과 관련 없더라도 다른 실적을 기재해도 되나요?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별도 메타버스 예술활동 수행실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작성 시에는 메타버스 예술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본 사업 취지 및 목적과 관계없는 내용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기술 기업'이 신청주체로 지원신청을 희망할 경우, 예술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필요합니다.</p> <p>Q. 공동참여자(공동참여 협약서 체결 대상)인 개인이 별다른 사업 수행실적이 없어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수행실적이 없어도 참여 및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의기준 중, '수행역량'을 참고하셔서 지원신청서에 단순 참여자가 아닌 공동참여자로 본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지, 그리고 해당 인력이 신청사업계획을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6	<p>[기타 신청자격] Q. 자체 보유 인력으로 창작과 기술 활용 창제작이 모두 가능한 문화예술단체입니다.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소속 직원(인건비 편성 대상, 신규 채용 시 신청 접수마감일 이전 채용 완료) 등 문화예술단체·기관·기업 자체 보유 인력만으로 창작·발표와 기술 활용의 주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신청 시, 공동참여 협약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지원신청서 p1. 공동참여 구분에 '단독'으로 표기 및 프로젝트 단독 수행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내용을 지원신청서에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단기·일시적으로 협업하는 인력인 경우에는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p>
사업내용	7	<p>[메타버스 속성 및 기술 활용] Q. 상용 플랫폼(네이버 제페토, 이프랜드, 마인크래프트 등)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본 사업을 위해 새롭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나요? ▶ 활용 플랫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메타버스 속성을 활용한 메타버스 '예술 창작'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이 아니오니 지원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8	<p>[지원신청 불가 사업] Q. 제가 창작한 예술작품(별도 제작 영상)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시연하는 경우에도, 지원신청 불가 사업인가요? ▶ 기존 작품을 메타버스 속성에 맞추어 발전시켜 새롭게 창작하는 것이 아닌, 메타버스 플랫폼에 관객들이 방문해 기존에 제작된 작품을 관람(생중계 및 녹화중계)만 하게 하는 사업은 지원신청 불가 사업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사업내용	9	<p>[발표 및 최종 결과물 형식] Q. 반드시 물리적 시연장소(오프라인에서 진행)가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사업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사업수행 장소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창작 발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구현(메타버스 속성 표현 방식 등)을 위해 오프라인 공간이 상호보완적 요소 혹은 발표 장소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발표할 수 있습니다.</p>										
	10	<p>[결과물] Q. 지원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결과발표'와 'PPT/영상 결과물' 모두 필수인가요? ▶ 네. 두 사업유형 모두 메타버스 환경에서 향유자/이용자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실시간 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하셔야 하며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결과를 담은 PPT(실험 창작) 또는 영상 결과물(확장 발표)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PPT/영상) 필수포함내용 : 기획의도, 사전조사내용, 제작 과정, 발표회 참석자(관객) 주요 의견, 향후 발전(개선) 계획 Q. '결과발표'에는 일반 관객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 [실험 창작] 예술현장 혹은 기술 전문가, 사업관계자 대상 발표회(시연회, 쇼케이스, 온라인 투어)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확장 발표]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공개 공연 또는 전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p>										
예산편성	11	<p>[인건비] Q. 인건비 편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반드시 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요구되며 프로젝트 참여율에 따라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부담 4대 보험 비용은 예산편성 할 수 없습니다.(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모두 해당) 참여율을 부풀려 과다하게 인건비를 편성 및 지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오니, 예산 편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개인) 대표자 사례비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일반수용비(사례비)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 가능합니다. * 고용형태별 예산 구분</p> <table border="1" data-bbox="430 1241 2134 1410"> <thead> <tr> <th data-bbox="430 1241 696 1281">보조비목</th> <th data-bbox="696 1241 956 1281">보조세목</th> <th data-bbox="956 1241 2134 1281">설명</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30 1281 696 1326" rowspan="3">인건비</td> <td data-bbox="696 1281 956 1326">보수</td> <td data-bbox="956 1281 2134 1326">단체·기업 소속 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td> </tr> <tr> <td data-bbox="696 1326 956 1370">상용임금</td> <td data-bbox="956 1326 2134 1370">단체·기업 소속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td> </tr> <tr> <td data-bbox="696 1370 956 1410">일용임금</td> <td data-bbox="956 1370 2134 1410">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단기 보조인력에 대한 임금(일용직, 기간제 등)</td> </tr> </tbody> </table>	보조비목	보조세목	설명	인건비	보수	단체·기업 소속 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단체·기업 소속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단기 보조인력에 대한 임금(일용직, 기간제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설명										
인건비	보수	단체·기업 소속 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단체·기업 소속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단기 보조인력에 대한 임금(일용직, 기간제 등)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예산편성	12	<p>[자부담] Q. 공고문에 나와있는 자부담 작성예시 금액 이상으로 자부담을 편성해도 되나요? 또, 지원신청 시 작성한 자부담은 선정 이후 전액 사용해야 하나요?</p> <p>▶ 예시로 작성된 금액은 총 사업비 10% 이상으로 자부담을 편성하기 위한 최소 금액으로, 작성예시 금액 이상의 자부담 편성도 가능합니다. 단, 편성하신 자기부담금 역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과 및 정산 대상입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따라 편성한 자부담은 모두 소진해야 하며, 보조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자부담 분할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 시 작성해주신 자부담율은 선정 이후에도 준수해야 하오니, 지원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div>
	13	<p>[예산편성 가능/불가항목] Q.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 불가'에서 언급된 자산취득성 물품이 무엇인가요?</p> <p>▶ 사업 종료 후 신청 주체의 자산이 되어 반영구적으로 사용 또는 재판매 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창작 및 결과발표에 필요한 장비의 경우 '임차'를 통하여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 기기 불가) 예) VR 헤드셋, 외장하드, 카메라, 책상, 의자, 디지털부동산(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토지) 등</p> <p>Q. 사례비 지급에 수반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시 '사업자부담분'도 편성이 가능한가요?</p> <p>▶ '운영비-일반수용비'로 편성가능합니다.</p> <p>Q.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도 국고보조금 또는 자기부담금으로 편성 가능한가요?</p> <p>▶ 불가합니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만 편성하여 주시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 외 자부담은 지원신청서에 기재하시는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이외 별도로 부담하시는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p> <p>Q. 사업 수행주체의 상주 및 정기적인 연습을 위한 사무실·연습실 등 공간을 임차료도 편성할 수 있나요?</p> <p>▶ 불가합니다.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운영비 성격의 집행항목은 예산 편성이 불가합니다.</p>

구분	연번	주요 질의 응답
지원신청서	14	<p>Q. '참여인력'의 '전담인력'과 '비전담인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p> <p>▶ 프로젝트 추진 시, 역할의 중요도 및 기여도, 참여율 등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주 참여인력) : 기획, 행정, 제작, 개발, 연구, 홍보 등 투입인력 전원에 대해 기재하여 주십시오. - 비전담인력(수행역할의 중요도 혹은 기여도 20% 미만인 비정기적 참여인력) : 보조스태프, 자문인력 등
	15	<p>Q. 지원신청서 '신청개요'의 '사업담당자'와 공동협업 수행 협약서 '신청주체-총괄 책임자'가 같아야 하나요?</p> <p>▶ 아닙니다. 사업 추진체계에 맞는 담당자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p>
	16	<p>Q. 지원신청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참고자료'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 시 어떤 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p> <p>▶ 선택사항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p>신청인이 판단하기에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전 활동 실적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파일인 경우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첨부파일면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p>
NCAS	17	<p>Q.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원신청하려고 하는데 공모사업 유형명이 일부만 보입니다. 어느 유형인지 확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 시스템 사용환경에 따라 일부 사업명이 잘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p> <p>'사업명' 탭을 오른쪽으로 확장하여(표 테두리에 나타나는 '↔'를 늘림) 사업명 전체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p>
	18	<p>Q.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p> <p>▶ 본 사업 신청 전, 대표자를 반드시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단체명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시고, ②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주셔서 변경승인 완료된 이후에 지원신청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19	<p>Q. 신청사업 세부 분야와 신청사업 유형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신청 전 반드시 수정해야 하나요?</p> <p>▶ 본 사업의 장르 구분 없이 '문화일반'으로 심의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의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세부 분야'와 '신청사업 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이 없을 시 '기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그 밖에 별도 양식의 '지원신청서'에 해당 사업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 문의처

- 061-900-2236,2235 / metaverse@arko.or.kr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 이용 바랍니다.